

2026학년도 2학기 휴·복학 신청 안내

I. 휴학 신청 안내

1. 신청기간

- 가. 일반휴학
: 2026.8.3.(월) 9:00 ~ 10.8.(목) 12:00 < 수업일수 1/3선 이내 >
- 나. 특별휴학(병역, 질병, 임신·출산·육아, 창업, 천재지변)
: 2026.8.3.(월) 9:00 ~ 12.11.(금) 12:00 < 기말고사 전일까지 >
※ 특별휴학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(세부내용 아래 참고)

2. 신청방법

- 가. 인터넷 신청
- 부경포털(<http://portal.pknu.ac.kr/>)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
 - 학사정보-학적-학적변동-휴학신청 메뉴에서 신청
 - 인터넷 신청 시 휴학원 제출 불필요
- 나. 방문 신청 ※ 휴학원/ 휴학기간연장원 서식: 대표홈페이지-커뮤니티-참여·소통채널-자료실
- 소속 학부(과) 사무실에 휴학원 및 증빙서류(특별휴학의 경우에 한함)제출

II. 휴학 제도 안내

1. 공통 유의사항

- 가. 연장 희망 시 휴학 기간 만료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 복학 신청 없이 휴학 연장 가능
- 나. 졸업가능자 및 조기졸업 신청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
- 다. 신청 후 ‘학사행정정보시스템-학사정보-학적관리-학적표 조회’에서 학적상태 확인

2. 일반휴학

※ 복학예정일자와 무관하게 1개 학기만 휴학한 뒤 복학 가능

- 가. 휴학 기간:1회 2개 학기 이내, 최대6개 학기(3년)까지 가능(특별휴학기간 제외)
- 나. 증빙 서류: 휴학원 1부(인터넷 신청시 제출 불필요)
- 다. 유의 사항
- 휴학 신청 시 자동 연장에 체크하여 신청한 경우 휴학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3년간 휴학 자동 연장 처리(복학 시 자동 연장 종료)

3. 특별휴학

구분	휴학기간	증빙서류	비고
병역휴학	복무기간+전역 후 추가 2개학기 이내	입영통지서, 주민등록초본(입영일자 기재), 병적증명서등 관련 증빙 중 1부 (택1)	귀향조치 등 신분 변동 발생 시 즉시 학부(과) 사무실로 연락하여 학적상태 변경
질병휴학	1회 1개 학기이내 (연장가능)	- 4주 이상 진단서 (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발행)	
임신, 출산, 육아휴학	1회 2개학기 이내 (연장 가능)	임신헌인서, 가족관계증명서등 해당 증빙자료	· 자녀 1인당 6개 학기(3년) 이내로 사용 가능 · 유아휴학은 12세(6학년)이하에 한함
유학휴학	1회 2개 학기 (연장 가능)	여권 사본(비자 포함) 및 입학허가증명서 사본	
창업휴학	1회 2개 학기 이내 (최대 6개 학기(3년))	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	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표기된 임원에 한함 (감사 불인정)
천재지변휴학	1회 1개 학기 (연장 가능)	해당 증빙서류	

※ 육아휴학 예외사항: 자녀의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세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함

III. 복학 신청 안내

1. 신청기간

2026.8.3.(월) 9:00 ~ 10.8.(목) (수업일수 1/3 이내)

※휴학 기간 만료자 중 위 기간 내에 휴학 연장 또는 복학 미신청 시 제적 처리

2. 신청방법

- 가.인터넷 신청
- 부경포털(<http://portal.pknu.ac.kr/>)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
 - 학사정보-학적-학적변동-복학신청 메뉴에서 신청
 - 인터넷 신청 시 복학원 제출 불필요
- 나. 방문 신청 ※ 복학원 서식: 대표홈페이지-커뮤니티-참여·소통채널-자료실
- 소속 학부(과) 사무실에 복학원 및 증빙서류(특별휴학의 경우에 한함)제출

3. 증빙서류

- 가. 복학(병역복학 제외): 복학원 1부(인터넷 신청 시 제출 불필요)
- 나. 병역복학
- (전역한 경우) ① 복학원 1부
② 전역증 사본, 병적증명서,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
 - (전역예정인 경우) ① 복학원 1부, ② 휴가증 사본 1부, ③ 전역예정증명서1부, ④ 소속 부대장 추천서 1부

4. 유의사항

- 가. 휴학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자동으로 복학 처리 되지 않으니 휴학 기간 만료자는 반드시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해야 함(미신청 시 미복학 제적 처리)
- 나. 예비군 전입 신고(문의: 예비군연대, 051-629-6936~7)
- 병역(군 전역)복학생 및 신·편입생 중 군필자는 반드시 예비군 전입 신고하여야 함
- 다. 신청 후 ‘학사행정정보시스템-학사정보-학적관리-학적표 조회’에서 학적상태 확인